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고 제2026-5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안내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229(2025.12.08.)

2. 주요내용

□ 사전 절차 강화

-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현행 규정에 지역 주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및 임원 위촉 의무 추가
- 임기만료 1년 이내 추진 제한
 - 다만 외국정부 공식 초청, 국제회의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만 허용
 - 일반 출장은 긴급성, 출장 결과 화용성 등 충족시에만 의장이 허가
- 의장의 허가 검토서 작성 및 누리집 공개 절차[신설]

□ 사후 관리 강화

- 모든 징계 및 환수 처분의원에 대해 2년 이내 출장 제한 의무화
- 출장 후 심사위원회에서 위법·부당한 출장 판단 시 감사원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조사 의뢰 의무화[신설]

□ 직원 보호 강화

- 지방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과 출장 강요 등 위법·부당한 명령 거부 및 직원 인사·평가 등 불이익 처분 금지[신설]
- 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 금지[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5년 12월 15일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참조: 의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다.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성동구 고산자로 266 (행당동), 성동구의회 의정팀

나. 문 의 처

- 전 화: 02-2286-6452
- 팩 스: 02-2286-5948
- 이메일: 2015020334@sd.go.kr